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 28.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제출일자: 2021. 1. 14.
- 회부일자: 2021. 1. 15.
- 검토기간: 2021. 1. 15. ~ 2021. 1. 25.

2. 제안이유

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주거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상향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 달서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주거문제 상담 및 서비스연계를 통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2 및 제4조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명 청: 「달서주거복지센터」
- 장 소: 월성2주공아파트 상가 301호(월성로 77)
※ 송현동 든들C센터로 이전 시까지 임시 사용(무상임대)
- 시설규모: 209m²(사무실1, 상담실1, 교육장1, 집수리 물품창고1)

시설명	용도	면적	비고
달서주거복지센터	계	209m ²	
	사무실	60m ²	
	상담실	20m ²	
	교육장	89m ²	
	집수리 물품창고	40m ²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3년
- 운영방법: 민간위탁(주거복지 전문기관)
※ 공개모집,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사무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 검토의견

- 본 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사전(事前) 동의(同意)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¹⁾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바, 따라서 집행부는 현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탁 예산 과목(#307-05)을 계상(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
 - 일부에서는 위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별첨)」를 상기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조례~” 범주로 해석, 위탁 예산(#307-05)을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제기.
 - 동 주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別論)으로 하더라도, 의회 제출 예산안에서 집행부가 예산 성격을 <위탁 예산(#307-05)>으로 계상(편성)²⁾ 한 것은 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을 “~위탁한다. (위탁해야 한다)”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립 불가능한 사항. 이는 법령 해석의 오류(誤謬)로 결국 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의회는 위 <위탁 예산(#307-05)> 예산을 승인(承認)하였음. 그러나 예산을 승인하였다 하여 이를 동 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의회가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1)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중)

2) 2020년 12월, 집행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위탁 예산(#307-05) : 1억 5천만 원>을 편성

- 이처럼 집행부가 위탁 예산안은 작년(2020년) 12월에, 위탁 동의안은 금번(2021년) 1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절차적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집행부 스스로 야기함.
- 현 상황에서 동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회의 선택지는 크게 【① 동의 ② 부동의 ③ 의결 보류】 3가지임.
 - ① 동의하면, 절차 위배 여부 논란³⁾이 재연(再演)될 우려.
 - ② 부동의하면, 이전의 예산 의결 행위에 대한 번복 논란 우려
 - ③ 의결 보류하면, 의결된 예산의 집행 보류로 인한 논란 우려 있음.
- ※ 참고 : <부동의> 또는 <의결 보류>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먼저 청취한 후, 이를 기반으로 본 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이 절차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절차 위배 우려 해소되지 않은 채 의결된 위원회 의결 사항은 향후 본회의에서 다시 절차적 공정성 여부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의결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할 수 있음.

【관련 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지원 조례】

제14조(주거복지센터 설치)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